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85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민병덕 · 김남근 · 김영배
김태년 · 임호선 · 염태영
이강일 · 안도걸 · 김문수
정진욱 · 송영길 · 김한규
이주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

항 제1호 · 제2호 등).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서류로 한정한다.

다만,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로 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검사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제2조(업무) ① ----- ----- -----.
1. 법원과 <u>검찰청</u> 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단서 신설>	1.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u> . <u>다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형사사법절차 서류로 한정한다.</u>
2. 법원과 <u>검찰청</u> 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단서 신설>	2.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u> ----- <u>. 다만,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로 한정한다.</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
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
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
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
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
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
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
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① -----공소청-----

-----.

② -----

-----.

1. -----공소청-----

2. -----공소청-----

③ (생 략) 제23조(사무원) ① ~ ⑤ (생 략)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에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은 전과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무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지방공소청검사장</u>----- ----- -----. ⑦ ----- -----<u>지방공소청검사장</u>----- ----- -----.
---	---